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가합57847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7. 4. 18 선고 2016나207051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가합578475 판결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2016. 8. 12.

판결 선고 2016. 9. 2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3,447,952원과 그 중 372,509,532원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5. 12. 2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190,650,8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190,650,8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1) 원고는 2014. 5.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9억 원, 신용보증기한 2022. 5. 20.까지, 보증비율 90%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A은 그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1) 피고 A은 2014. 7. 1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기업은행(변경전 상호 : 중소기업은행, 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행기 2022. 5. 20.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 2015. 7. 18.부터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2015. 9.

7.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2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 잔액과 그 이자로 합계 372,509,532원(= 원금 367,290,000원 + 이자 5,219,53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와 별도로 구상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위하여 938,420원을 지출하였다.

다. 1) 피고 B는 2015. 7. 2. 아버지인 피고 C와 사이에, 시가 428,841,88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5. 7. 21. 접수 제16389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그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우리은행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3. 12. 26. 접수 제24616호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무인 피고 B의 우리은행에 대한 555,000,000의 대출금채무(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는 2015. 7. 2. 120,000,000원, 2015. 7. 21. 435,000,000원이 각 변제됨으로써 소멸하였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8. 13.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A, B: 자백간주

피고 C: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3,447,952원(= 보증채무이행금액 372,509,532원 + 권리의 보전에 지출한 비용 938,420원)과 그 중 보증채무이행금액 372,509,532원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인 2015. 11. 20.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21.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원고와 피고 A이 2014. 5. 2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4. 7. 1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 B이 2014. 5. 21.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있었다.

피고 C은 2014년경부터 피고 A의 경영이 급격히 어려워졌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2015. 7. 18.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자 지급을 지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장래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원고가 2015. 11. 20.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 B의 무자력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리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 시가 428,841,880원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 760,000,000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E건물 제14층 제1403호, 시가

310,000,000원 상당의 의왕시 F건물 제8층 제807호가 있었던 사실, 소극재산으로 우리은행에 대한 1,163,426,000원의 대출금채무(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555,000,000원의 대출금채무 포함), 기업은행에 대한 320,000,000원의 보증채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66,150,000원의 보증채무,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 대한 19,465,000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원고에 대한 373,447,952원의 구상금채무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¹⁾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443,647,072원[= 1,942,488,952원(= 1,163,426,000원 + 320,000,000원 + 66,150,000원 + 19,465,000원 + 373,447,952원) - 1,498,841,880원(= 428,841,880원 + 760,000,000원 + 310,000,000원)]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3) 사해행위 및 피고 B의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에 대한 263,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변제받는 것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252,224,686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합계 1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인수함으로써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를 초과하는 530,124,686원(= 263,000,000원 + 252,224,686원 + 15,000,000원)을 부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24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C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었던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되어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C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참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5) 소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1) 원상회복의 방법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2015. 8. 13. 각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의 피담보채무액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고로부터 피고 C이 대위변제한 피담보채무액 252,124,68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위와 같은 선택권을 가진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고, 이 법원의 우리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 C이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 B의 채무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8. 13.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430,650,88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 그 이후의 시가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240,000,000원이고 그 피담보채무액은 위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90,650,880원(= 430,650,880원 - 240,000,000원)이 된다. 3) 한편 앞서 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위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공동담보가액 190,650,88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190,650,8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공동담보가액은 원고와 피고 C 등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이므로, 그 중 원고와 피고 C의 채권액에 대한 원고의 채권액의 비율(= 공동담보가액 × 원고의 채권액 / (원고의 채권액 + 피고 C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참조), 가액배상금을 수령하게 되는 취소채권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러한 불공평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를 통하여 시정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참조),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수영

판사김진희

판사박재민

별지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그러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따라서 2015. 11. 20. 성립한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금채무는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2)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피고 C은 위 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당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 임대차보증금은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 G, H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합계 15,000,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